

1. 제정이유

최근 수상레저활동 인구의 증가 및 수상레저 기반의 확대 등 수상레저 환경이 급변하고 있으나, 현행법령은 수상레저의 안전관리 기준, 보험 관리 등의 규정이 미비하여 변화되는 수상레저 환경에 탄력적인 대응이 곤란하였음.

또한, 현행법은 1999년 제정된 이후 여러 차례 개정을 통하여 조문이 복잡해지고, 법률 체계의 일관성이 부족하여 국민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사항을 현행 「수상레저안전법」에서 분리하여 지자체장의 등록사무에 대한 해양경찰청장의 지도·감독 근거 마련,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안전검사필증 부착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8957호, 2022. 6. 10. 공포, 2023. 6. 11.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2장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안 제2조~제10조)

- 1) 등록번호판재발급 신청을 할 경우 재발급 기간(14일) 동안 재발급 신청에 관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재발급확인서 규정 신설(제4조)
- 2) 말소등록 신청 절차를 규정하고, 말소등록 사유를 증명하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의 범위를 구체화(제6조)

나. 제3장 동력수상레저기구의 검사(안 제11조~제23조)

- 1) 현행 고시(「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기준」)에 규정되어 있던 동력수상레저기구 설비 등에 관한 규정이 법률로 상향(법 제21조~제24조)됨에 따라 안전검사 신청 시 이와 관련한 서류를 첨부하도록 함(안 제11조)
- 2) 안전검사의 시기, 방법 등을 구분하여 별도조문으로 구성하고, 임시검사 대상이 되는 사유를 구체화하는 등,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던 현행법령 체계 재정비(안 제12조~제14조)
- 3) 안전검사를 받기 위해 입거 또는 상가의 목적으로 단기간 운항하는 경우와, 최대속력의 측정 등 시운전을 목적으로 운항하는 경우 안전검사 없이 운항할 수 있는 안전검사의 예외사유로 규정(안 제15조)
- 4) 안전검사 후 발급되는 안전검사필증의 부착의무 및 부착위치에 관한 내용을 규정(안 제18조)
- 5) 안전검사 관련 서류의 보존·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안 제19조)
- 6) 검사대행자 중 매년 자체교육계획을 제출하여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자체교육에 대한 적합성을 인정받을 경우 검사대행자 의무교육대상에서 제외토록 함(안 제23조)

다. 제4장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 기준(안 제24조~제27조)

- 1) 법에서 위임한 구조설비의 구체적 범위, 무선설비·위차발신장치 설

치의 예외 대상에 대하여 규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2)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

제2조(등록신청서)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3조(등록원부 등) ① 영 제7제1항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원부(이하 “등록원부”라 한다)는 별지 제2호서식의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원부(갑)(이하 “갑등록원부”라 한다) 및 별지 제3호서식의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원부(을)(이하 “을등록원부”라 한다)로 구분한다.

②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등록원부 열람·발급 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③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등록원부 사본은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

6호서식과 같다.

- 제4조(등록증·등록번호판의 발급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 한강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과 등록번호판을 발급하는 경우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원부에 등록한 후 3일 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7호서식(영문등록증은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의 등록증과 별표 1의 규격에 따른 등록번호판을 발급해야 한다.
- ②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등록증 또는 등록번호판을 다시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등록증·등록번호판 재발급신청서에 종전의 등록증 또는 등록번호판을 첨부(없어진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초본(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번호판의 재발급을 신청한 사람이 신청사실의 확인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번호판 재발급 신청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 ④ 해양경찰청장은 등록번호판의 제작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5조(변경등록의 신청 등) ①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사항 변경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변경등록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변경사유의 사실 관계를 확인한 후 등록사항을 변경하고, 변경된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제6조(말소등록의 신청 등) ①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는 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말소등록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의 동력수상레저기구 말소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증
2. 해양경찰관서 또는 경찰관서에서 발급하는 사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멸실되거나 수상사고가 발생한 경우만 해당한다)
3. 해양경찰관서 또는 경찰관서에서 발급하는 분실·도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분실·도난의 경우만 해당한다)
4. 사용 폐지 또는 수상레저활동 목적 외의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분실·도난 외의 경우만 해당한다)
5. 등록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 그 사람의 승낙서 또는 그 사람에게 대항할 수 있는 증명서
6. 구조·설비·장치의 변경에 따라 등록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에서

제외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7. 수출신고필증 등 수출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수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말소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1. 주민등록표초본(개인인 경우만 해당하며 주민등록증, 자동차 운전면허증 또는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의 제시로 그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해당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그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말소등록에 동의한 경우와 법 제10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해당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소유자는 부득이한 사유 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해당 등록증을 반납해야 한다.

제7조(동력수상레저기구에서 제외되는 경우) 법 제10조제1항제3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동력수상레저기구의 구조, 설비 또는 장치의 변경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를 말

한다.

1. 모터보트, 세일링요트의 총톤수가 20톤 이상인 경우
2. 고무보트의 추진기관이 30마력(22kW) 미만인 경우

제8조(등록의 경정신청서) 영 제12조제3항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의 경정신청서는 별지 제13호서식과 같다.

제9조(등록번호판의 부착 등)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는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번호판 2개를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측면과 뒷면에 견고하게 부착해야 한다. 다만, 동력수상레저기구의 구조상 뒷면에 부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른 면에 부착할 수 있다.

제10조(시험운행의 허가) ① 법 제14조제1항에서 “해양수상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장비”란 다음 각 호의 장비를 말한다.

1. 승선인원에 해당하는 수의 구명조끼
2. 소화기
3.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통신기기

②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시험운행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14호서식의 시험운행허가 신청서
2. 별지 제15호서식의 시험운행허가 계획서
3.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사진(전면, 좌측면·우측면 및 후면 각 1장)

③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시험운행허가증은 별지 제16호서식과 같다.

제3장 동력수상레저기구의 검사

제11조(안전검사의 신청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청장 또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검사대행자(이하 “해양경찰청장등”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표 2의 검사대상 장비 명세서
2. 별표 3의 구분에 따른 도면(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3부
3. 「선박안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복원성에 관한 자료(승선정원이 13명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3부
4. 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무선설비, 위치발신장치의 허가증(「전파법」 제19조에 따른 무선국 허가와 관련된 서류) 또는 검사증 등 설비의 적합성을 증명하는 서류(무선설비 또는 위치발신장치가 설치된 경우만 해당한다)
5. 선박용 물건의 적합성을 증명하는 서류(선박용 물건임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안전검사 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게 할 수 있다.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았던 동력수상레저기구로서

해양경찰청장등의 확인을 받은 도면에 변경이 없는 경우

2. 해양경찰청장등의 확인을 받은 도면에 따라 동일한 형식으로 건조되는 수상레저기구에 대해 검사를 신청하는 경우

③ 해양경찰청장등은 제1항에 따라 안전검사 신청을 받은 경우 제출서류를 검토하고 제출서류가 누락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14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해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필요한 기간은 제12조제2항에 따른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12조(안전검사의 시기 등) 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규검사의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모터보트, 세일링요트에 한정한다)에는 건조에 착수한 때부터 실시한다.

가. 총톤수가 5톤 이상인 경우

나. 연해구역 이상을 운항구역으로 하는 경우

다. 승선정원이 13명 이상인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하거나 등록을 하려는 때에 실시한다.

가. 외국에서 제작된 경우

나. 「선박법」 또는 「어선법」에 따른 검사를 받아오던 선박을 동력수상레저기구로 사용하려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에는 건조가 완료된 후에 실시한다.

② 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검

사유효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하여 전후 각각 30일 이내에 받아야 하며, 해당 기간 중에 안전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에 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소유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의 30일 이전에 안전검사를 받을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안전검사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1. 최초로 신규검사를 받은 경우: 해당 안전검사증을 발급받은 날
2. 안전검사증의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0일 이내에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종전 안전검사증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
3. 제2호에 따른 기간이 아닌 때에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해당 안전검사증을 발급받은 날

제13조(안전검사의 방법 등) ① 해양경찰청장등은 제1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서류의 내용이 법 제21조 및 제24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적합성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서류에 확인 표시를 한다.

③ 모터보트 및 세일링요트의 경우 「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에 따라 총톤수측정을 실시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것 외에 안전검사의 세부방법·준비사항·총톤수 측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4조(임시검사의 대상) ① 법 제15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구조, 설비 또는 장치”란 동력수상레저기구의 감항성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 및 구조물, 길이·너비·깊이, 총톤수, 추진기관을 말한다.

② 임시검사의 대상이 구조, 설비 또는 장치의 변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선체의 구조 변경 또는 구조물의 설치·제거로 선체 강도, 수밀성, 부양성 또는 복원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2. 길이·너비·깊이 또는 총톤수의 변경으로 선체 강도, 수밀성, 부양성 또는 복원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3. 추진기관, 프로펠러 등 기구의 추진과 관계있는 설비의 교체 또는 변경 등으로 추진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4. 타 또는 조타장치의 교체 또는 변경으로 조종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③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임시검사를 정기검사로 대체하려는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정기검사의 신청 시 구조·설비·장치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첨부해야 한다.

제15조(안전검사의 예외) 법 제15조제3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시험운항허가를 받아 운항하는 경우
2.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실시하는 경우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안전검사를 받기 위해 입거, 상가 또는 거선의 목적으로 국내 각 항간(巷間)을 운항하는 경우(제11조제1항에 따라 안전검사 신청을 한 경우에 한정한다)

나. 시운전을 목적으로 운항하는 경우(법 제1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안전검사만 해당한다)

제16조(안전검사증·안전검사필증의 발급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증은 별지 제18호서식과 같고, 안전검사필증의 규격은 별표 4와 같다.

②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안전검사증 또는 안전검사필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안전검사증·안전검사필증 재발급 신청서에 안전검사증 또는 안전검사필증을 첨부(없어진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해양경찰청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7조(정원·운항구역의 지정)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정원을 지정할 경우에는 소유자의 요청, 동력수상레저기구의 구조, 내부구조물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운항구역을 지정할 경우에는 소유자의 요청, 동력수상레저기구의 구조, 법 제4장에 따른 안전기준 충족여부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에 대하여는 평수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1. 수상오토바이

2. 「어선법 시행규칙」 별표 16 제3호카목에 따라 효력시험 외의 검사 준비가 면제된 기관을 사용하는 기구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정원 · 운항구역 지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8조(안전검사필증의 부착 등)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는 법 제17조에 따라 안전검사필증을 등록번호판의 오른쪽 옆에 견고하게 부착해야 한다. 다만, 기구의 구조상 등록번호판의 오른쪽 옆에 부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른 면에 부착할 수 있다.

제19조(안전검사서류의 보존 · 관리) ① 안전검사서류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검사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 검사신청 접수일부터 10년

2. 안전검사증 및 검사결과와 관련된 서류: 해당 동력수상레저기구가 말소등록 된 날부터 3년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서류의 관리방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를 준용한다.

제20조(검사대행자 지정신청서 등) ① 영 제14조제2항에 따른 검사대행자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20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4조제4항에 따른 검사대행자 지정서는 별지 제21호서식과 같다.

제21조(검사대행자 행정처분 통지서) 영 16조제2항에 따른 검사대행자

의 지정취소·업무정지 통지서는 별지 제22호서식과 같다.

제22조(안전검사원 교육) ①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검사대행자에 소속되어 검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안전검사원”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1년에 한번 14시간 이상의 정기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정기교육 외에 1년에 8시간 이하의 수시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정기교육을 받은 안전검사원에 대하여 시험을 실시하고,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을 받은 사람을 교육이수자로 인정해야 한다.

④ 정기교육과 수시교육의 내용 등 세부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3조(안전검사원 교육의 면제) ① 법 제20조제1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자체적으로 주기적 전문 검사교육을 실시(해양경찰청장이 제22조제4항에 따른 교육기준·내용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한정한다)하는 검사대행자에 소속된 안전검사원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검사원 교육을 면제받고자 하는 검사대행자는 매년 12월 31일까지 교육인원, 내용, 시간 등이 포함된 다음 연도 연간 교육계획을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해양경찰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연간 교육계획이 제22조제

4항에 따른 교육기준·내용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해 검사대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나 관련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전년도 연간 교육 실적(교육내용 및 시간, 교육 참가인원)
2. 안전검사원 보유기술 등 검사역량
3. 전년도 안전검사 대행실적 및 그 성과

제4장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안전 기준

제24조(동력수상레저기구의 구조·설비 등) 법 제21조제8호에서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탈출설비
2. 거주설비
3. 위생설비
4. 기관설비
5.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종류·기능에 따라 설치되는 특수한 설비로서 해양경찰청장이 인정하는 설비

제25조(무선설비 설치의 제외) 법 제22조제1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란 영 제2조제1호에 따른 평수구역 또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내수면을 운항구역으로 지정받은 동력수상레저기구를 말한다.

제26조(위치발신장치 설치의 제외 등) ① 법 제23조제1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란 영 제2조제1호부터 제3

호까지에 따른 평수구역, 한정연해구역 또는 내수면을 운항구역으로 지정받은 동력수상레저기구를 말한다.

②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위치발신장치로부터 수집한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위치정보는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안전관리, 수색구조, 사고조사 등의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해당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나 조종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

제27조(기타 안전기준) 법 제24조에서 “해양수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복원성
2. 등화 및 음향신호 장비
3. 항해계기 및 항해용구
4. 속구
5. 그 밖에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종류·기능에 따라 설치 또는 비치되는 물건으로서 해양경찰청장이 인정하는 설비

제5장 보칙

제28조(수수료)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5와 같다.

②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검사대행자가 수수료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검사대행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

우에는 검사대행자의 홈페이지에 그 사유를 소명하고 10일간 게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③ 검사대행자는 제2항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후 제2항에 따라 수렴된 의견을 고려하여 수수료의 요율 또는 금액을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정한 후 해양경찰청장에게 서면으로 승인신청을 해야 한다.

④ 해양경찰청장은 제3항에 따른 수수료를 승인하는 경우 이를 관보에 고시해야 하며, 검사대행자는 승인된 내용과 실비산정 내역을 검사대행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제29조(규제의 재검토) 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10조에 따른 시험운항허가의 요건: 2022년 1월 1일
2. 제22조에 따른 안전검사원에 대한 교육: 2014년 1월 1일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말소등록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에 말소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안전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3항 및 제15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에 안전검사 신청을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안전검사서류의 보존·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안전검사 신청을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개정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 제1호 중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을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으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을 “제16조제1항”으로,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를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등록번호판의 재질 및 규격 등(제4조제1항 관련)

1. 재질

가. FRP 또는 알루미늄 재질 등의 선체: 투명 PC원단(숫자 및 문자는 실크 인쇄)

나. 고무재질의 선체: 반사 원단(숫자 및 문자는 실크 인쇄)

다. 그 밖의 제작조건

1) 수상레저기구의 명칭과 일련번호 사이의 상단에 지름 20밀리미터인 원형모양으로 위조 방지용 홀로그램을 도안하여 넣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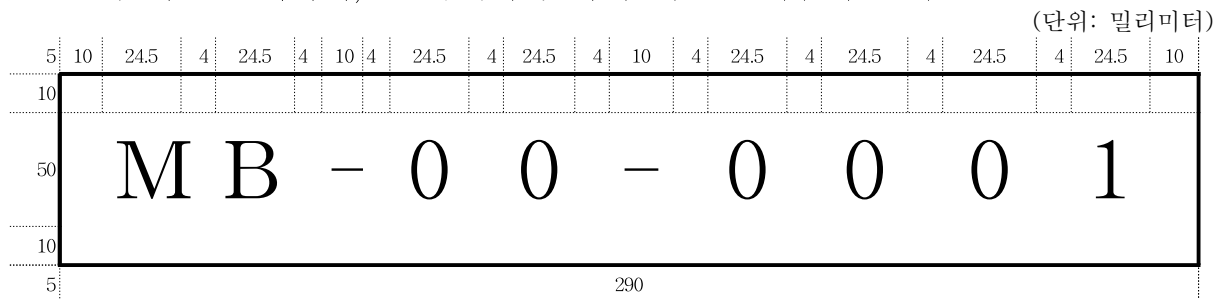
2) 부착하기 쉽도록 뒷면에 내구성이 강한 특수 접착제를 발라야 한다.

2. 두께

가. FRP 또는 알루미늄 재질 등의 선체 부착용: 0.3밀리미터

나. 고무보트 재질의 선체 부착용: 0.2밀리미터

3. 등록번호: 등록번호판에는 용도(기구의 종류)와 등록순서에 따른 일련번호를 문자(영문) 또는 숫자로 표시하며, 그 규격과 숫자의 배열은 다음과 같다.



4. 색상

가. 바탕: 옅은 회색

나. 숫자(문자): 검은색

5. 비고

가. 등록번호판은 해양경찰청에서 제작하여 광역 지방자치단체별로 배부하되, 제4조제4항에 따라 제작 대행자를 지정하여 업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나. 광역 지방자치단체는 기초 지방자치단체별로 등록번호판을 재배부하고, 배부현황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다. 등록관청(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이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자에게 번호판을 발급할 때에는 법 제2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해양경찰청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징수하여 등록자의 납입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라. 등록관청은 등록번호판 입고·출고 등 현황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검사대상 장비 명세서(제11조제1항제1호 관련)

기구명:

신청자:

순위	배수설비	조타장치	계선·양묘설비	구명설비	소방설비
1	동력빌지펌프 x 1	동력조타장치	뿔	구명정	무인기관실용 자동소화장치
2	수동빌지펌프 x 1	수동조타장치	쇠사슬	구명뗏목	휴대식소화기x 1
3	두레박 x 1		로프	구명부기	간이식소화기x 1
4	양동이 x 1			구명부환 x 1	소화전
5				구명조끼 x 1	소화펌프
6				자기발연신호	

순위	통신설비	등화장치	음향신호장치	항해용구	그 밖의 장비
1	EPIRB	장등	호중	조타자기컴파스	레이다반사기
2	VHF-DSC	현등	기적	휴대용자기컴파스	흑색구형형상물
3	AIS	선미등	에어혼	항해용레이다	
4	V-PASS	정박증		항해용해도	
5		랜턴		위성항법장치 (GPS)	

제출도면의 종류(제11조제1항 관련)

1. 국내 제작 동력수상레저기구(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나목의 경우)

구분	도면의 종류
가. 길이 12미터 미만	1) 일반배치도 또는 기구의 길이, 너비, 깊이, 승선정원, 격벽위치, 기관의 종류 및 출력 등이 기재된 제작사의 카탈로그(이하 ‘카탈로그’라 한다) 2) 강재배치도 또는 재료배치도 3) 중앙횡단면도 4) 승선정원이 13명 이상인 경우 추가 제출도면 가) 선체선도 나) 배수량등곡선도 다) 흘수표배치도
나. 길이 12미터 이상	1) 일반배치도 또는 카탈로그 2) 강재배치도 또는 재료배치도 3) 중앙횡단면도 4) 외관전개도(강선과 알루미늄 재질의 기구만 해당한다) 5) 기관실전체장치도 6) 전기계통도(동시에 사용하는 발전기 합계용량이 50kVA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7) 건조사양서(건조에 착수한 때부터 수행하는 검사만 해당한다) 8) 승선정원이 13명 이상인 경우 추가 제출도면 가) 선체선도 나) 배수량등곡선도 다) 흘수표배치도
※ 비고: 제12조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기구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질별 구조기준 또는 「어선법」 제3조에 따른 어선구조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위 표 가목 4) 또는 나목 8)을 제외한 나머지 도면에 대하여 「선박안전법」 또는 「어선법」에 따라 승인된 일반배치도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2. 외국 제작 동력수상레저기구(제12조제1항제2호가목의 경우)

구분	도면의 종류
가. 길이 12미터 미만	1) 일반배치도 또는 카탈로그 2) 강도계산서(강화플라스틱 재질의 기구는 선체판두께측정 등에 따른 강도계산서를 말한다) 3) 승선정원이 13명 이상인 경우 추가 제출도면 가) 선체선도 나) 배수량등곡선도 다) 흘수표배치도
나. 길이 12미터 이상	1) 일반배치도 또는 카탈로그 2) 강도계산서(강화플라스틱 재질의 기구는 선체판두께측정 등에 따른 강도계산서를 말한다) 3) 기관실전체장치도 4) 전기계통도(동시에 사용하는 발전기 합계용량이 50kVA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5) 승선정원이 13명 이상인 경우 추가 제출도면 가) 선체선도 나) 배수량등곡선도 다) 흘수표배치도
※ 비고 1. 위 표는 외국 제작 동력수상레저기구가 제1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2. 국제선급연합회의 정회원이나 해양경찰청장이 인정하는 외국정부의 검사를 받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서(검사수첩을 포함한다)가 있거나, 국제표준규격(ISO)에 따른 선체식별번호가 있는 경우에는 위 표 가목 3) 또는 나목 5)를 제외한 나머지 도면에 대하여 일반배치도 또는 카탈로그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안전검사필증의 재질 및 규격(제16조제1항 관련)

1. 재질: 반사 원단(숫자 및 문자는 실크 인쇄)
2. 두께: 0.2밀리미터
3. 크기: 70밀리미터 X 70밀리미터
4. 색상
 - 가. 도안 내부 색깔: 개인용-파랑색, 사업용-주황색
 - 나. 도안테두리: 검은색
 - 다. 숫자 및 문자: 흰색
 - 라. OI글자: 개인용-회색, 사업장용-남색
5. 그 밖의 제작조건
 - 가. 부착하기 쉽도록 뒷면에 내구성이 강한 특수 접착제를 발라야 한다.
 - 나. 안전검사필증에는 지름 20밀리미터인 원형 모양으로 위조 방지용 홀로그램을 도안하여 넣어야 한다.
6. 안전검사 실시년도가 표기된 도안 예시는 아래와 같다.



개인용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필증



사업자용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필증

수수료(제28조제1항 관련)

(단위: 원)

항목		관련 조문	수수료
1. 레저기구 등록	가. 신규	법 제6조제1항	1,500
	나. 변경	법 제6조제1항 및 제9조	1,500
	다. 말소	법 제6조제1항 및 제10조	1,500
	라. 재발급	법 제8조제2항	1,500
2. 등록번호판	가. 신규발급	법 제8조제1항	13,500
	나. 재발급	법 제8조제2항	13,500
3. 안전검사	가. 신규	법 제15조제1항	검사대행자가 정하는 수수료
	나. 정기	법 제15조제1항	
	다. 임시	법 제15조제1항	
	라. 증서발급	법 제16조제1항 및 제3항	
4. 안전검사필증	가. 신규발급	법 제16조제1항	4,000
	나. 재발급	법 제16조제3항	4,000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	------	------	----

소 유 자	성명 (대표자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주소	(전화:)	
	상호	(전화:)	

기구의 명칭	제조일 또는 수입일
--------	------------

제 조 지(제 조 자)	()
--------------	-----

기구의 종류	재 질(색상) ()	계류지 시 구(군)
--------	----------------	---------------

기관의 종류	최대 출력 마력	기관의 수
--------	-------------	-------

추진기관 모델명 (고유 번호)	승선정원	총톤수
---------------------	------	-----

길이	너비	깊이
----	----	----

공유자	취득 원인 [] 신규제조 [] 수입 [] 기타
-----	---------------------------------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1. 동력수상레저기구와 추진기관의 양도증명서, 제조증명서, 수입허가서, 매매계약서 등 등록원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공유자가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증명서류 3. 등록에 대하여 제3자의 동의·승낙을 필요한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신청서에 제3자가 직접 기명날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4. 안전검사증(사본) 5. 보험가입증명서(사본) 6. 등록할 수상레저기구의 사진(전면, 좌측면·우측면 및 후면 각 1장)	수수료 1,500원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주민등록표초본(개인인 경우만 해당하며 주민등록증, 자동차 운전면허증 또는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의 제시로 그 제출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3.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외국인만 해당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 및 제3호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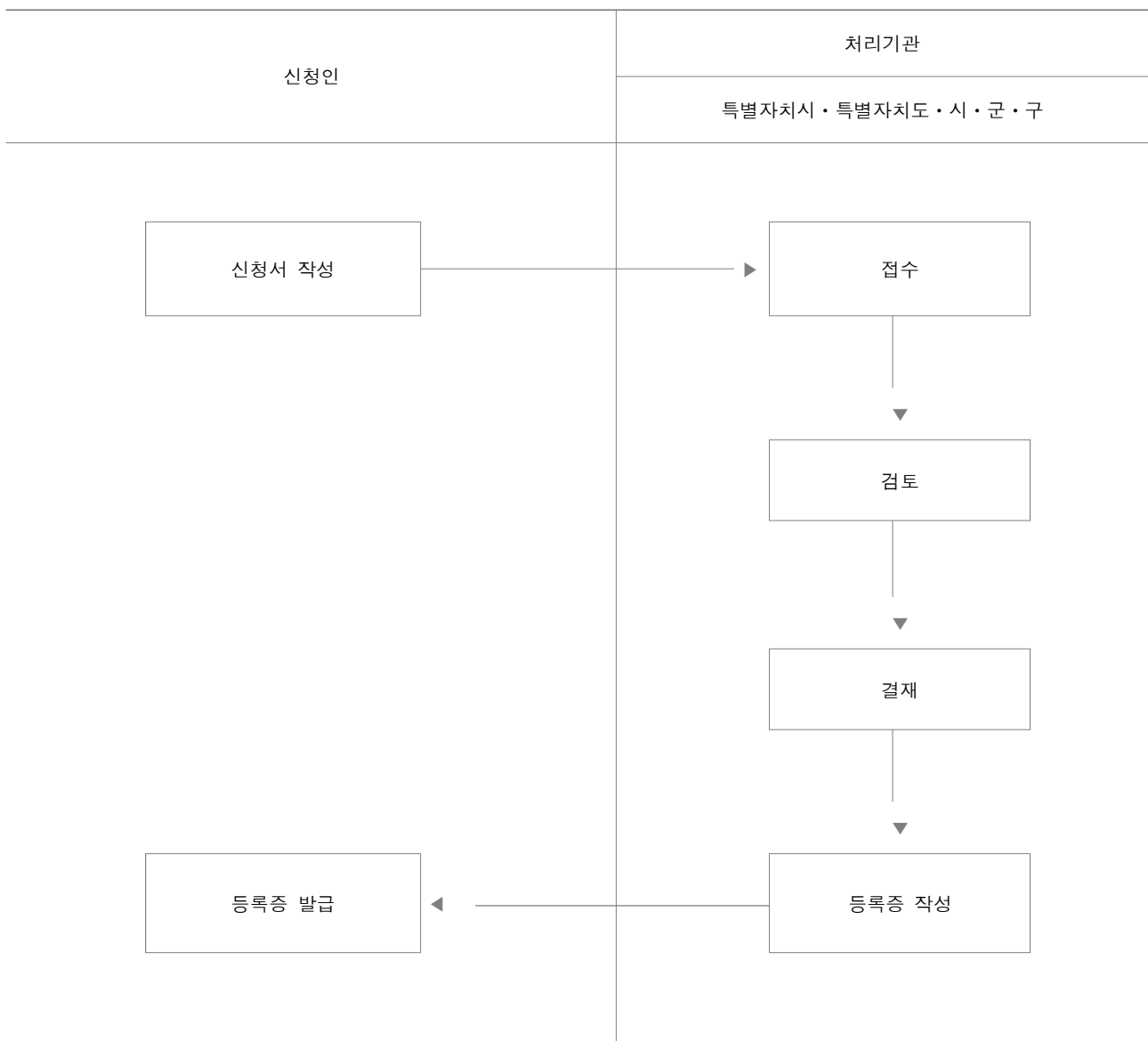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원부(갑구)

총 면 중 제 면				
등록번호	기구의 종류		기구의 명칭	
보관장소	시(도) 군 구 (읍 면 동)			
총톤수	최대출력		승선정원	
길이	너비		깊이	
추진기관 종류	추진기관 형식		추진기관 수	
제조년도 및 제조국	운항구역		용도 []개인용 []사업용	
최초등록일		말소등록일		
최종소유자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검사유효기간		검사대행자		
순위 번호	사 항 란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등록일	접수번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직인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원부(을구)

총 면 중 제 면							
일련번호(을)				저당권설정 접수번호			
저당권자	성명(명칭)						
	주소						
저당권 설정자	성명(명칭)						
	주소						
채무자	성명(명칭)						
	주소						
채권가액 원			저당권설정일		저당권말소일		
순 위	구 분	사 항 란				등록일	
공동저당된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번호 등							
종 류	등록번호	설정일	말소일	종 류	등록번호	설정일	말소일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직인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원부 [] 열람 [] 발급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 시
이해관계인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구분 ☐ 저당권자 ☐ 압류권자 ☐ 기타 (내용 명시)		
열람·발급 대상 동력수상 레저기구	명칭	등록번호	
	소유자 성명(법인명)	소유자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신청 내용	발급	갑구()부, 을구()부	
	열람	갑구()부, 을구()부	
발급·열람 용도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소: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

유의사항

1.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원부는 신청서의 내용을 모두 적어야 열람 또는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력수상레저기구 소유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는 적지 않을 수 있으며, 신청인이 소유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를 적지 않은 경우에는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원부 열람 또는 발급 시 소유자의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6자리를 표기하지 않습니다.
2.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원부의 열람은 등록관청의 담당 공무원이 보는 앞에서 해야 합니다.
3. 이해관계인 란에는 소유자 외 제3자가 열람·발급할 경우 기재하며, 등록원부에 기재된 사항(저당권자, 압류채권자 등)을 적습니다.
4. 이해관계인이 열람 또는 발급을 신청할 경우 소유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원부(을구)

총 면 중 제 면							
일련번호(을)				저당권설정 접수번호			
저당권자	성명(명칭)						
	주소						
저당권 설정자	성명(명칭)						
	주소						
채무자	성명(명칭)						
	주소						
채권가액		저당권설정일		저당권말소일			
원							
순 위	구 분	사 항 란				등록일	
공동저당된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번호 등							
종 류	등록번호	설정일	말소일	종 류	등록번호	설정일	말소일

이 사본은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원부(을)의 기재사항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직인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증

(앞쪽)

기구의 명칭	기구의 종류	
등록번호	용도	
계류지(보관장소 등)		
시(도) 군 구 (읍 면 동)		
추진기관 종류	추진기관 형식	추진기관 수
최대 출력	승선 정원	총톤수
소 유 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직인

※ 재발급일 :

유의사항

- 변경등록: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다음 각 목의 변경이 발생한 날부터 1개월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가. 매매·증여·상속 등의 소유권의 변경이 있는 경우
 - 나. 소유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 그 법인명을 말합니다),·주민등록번호·동력수상레저기구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 다. 동력수상레저기구의 구조·설비·장치의 변경에 따라 실시한 임시검사에 합격한 경우
 - 라. 동력수상레저기구 용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 말소등록: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말소등록을 신청해야 하고, 말소등록의 최고를 받고 그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직권 말소될 수 있습니다.
 - 가. 동력수상레저기구가 멸실되거나 수상사고 등으로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
 - 나.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존재 여부가 3개월간 분명하지 않은 경우
 - 다. 총톤수·추진기관의 변경 등으로 등록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에서 제외된 경우
 - 라.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수출하는 경우
 - 마. 수상레저활동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
- 안전검사: 등록대상인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수상레저활동에 이용하려는 자는 안전검사(신규검사·정기검사·임시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고,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용은 100만원 이하, 개인용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보험 또는 공제: 등록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는 반드시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해야 하고,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용은 100만원 이하, 개인용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번호판은 측면과 후면에 부착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10mm×297mm(백상지 120g/㎡)

변경 및 처분 사항

등록번호 제 호

연월일	내용	확인

Name of Water leisure craft		Kind of Water leisure craft	
Official Number			
Mooring Place			
Type of Engines	Cycle of Engines	Number of Engines	
Maximum Power (HP)	Number of Crew	Gross Tonnage	
Owner	Name(Or Name of company)	Identification number(Or Company / Alien registration No.)	
	Address		

The day of _____,
REPUBLIC OF KOREA

The _____ day of _____,
the Mayor / Governor / Head of _____

Any Changes for Water leisure Craft

Official Number :

Date(Y/M/D)	Content	Confirmation

[] 등 록 증
[] 등록번호판 재발급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등록증: 즉 시 등록번호판: 14일
소유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동력수상 레저기구	등록번호		
	종 류	용 도	
재발급 사유	[] 분실, 도난 등으로 없어진 경우 [] 알아보기 곤란하게 된 경우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청(신고)인 제출서류	1.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증 또는 등록번호판(없어진 경우는 제외합니다) 2. 대리 신청 시 소유자의 신분증 사본(자필서명 기입)	수수료: 등록증 1,500원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주민등록표초본(개인만 해당합니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합니다)	등록번호판 13,500원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 동력수상레저기구 소유자는 등록번호판이 떨어지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된 때에는 등록번호판을 다시 신청하여야 합니다.
-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번호판 재발급 시에 기재될 등록번호는 종전의 등록번호와 동일합니다.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번호판 재발급 신청확인서

소유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동력수상	기구명칭	기구의 종류
레저기구	등록번호	용도
신청일자	년 월 일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번호판의 재발급을 신청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직인

유의사항	이 확인서는 등록번호판 재발급 신청일로부터 14일간 유효하며, 재발급의 신청을 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것입니다.
------	---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사항 변경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			
기구의 명칭				기구의 종류			
등록 번호							
계류(보관)하는 장소							
시(도) 군 구 (읍 면 동)							
변경 사항	변경일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사유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 양도증명서, 증여증서 등 소유권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나. 가족관계등록부,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 소유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을 말한다) 또는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다. 명칭이 변경된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사진 라. 안전검사증 사본(제10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보험가입증명서 사본(소유권변경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4. 대리 신청 시 소유자 신분증 사본(자필서명 기입)	수수료 1,500원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주민등록표초본(개인인 경우만 해당하며, 주민등록증, 자동차 운전면허증 또는 동력수상레저 기구 조종면허증의 제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자등록증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1호 및 제2호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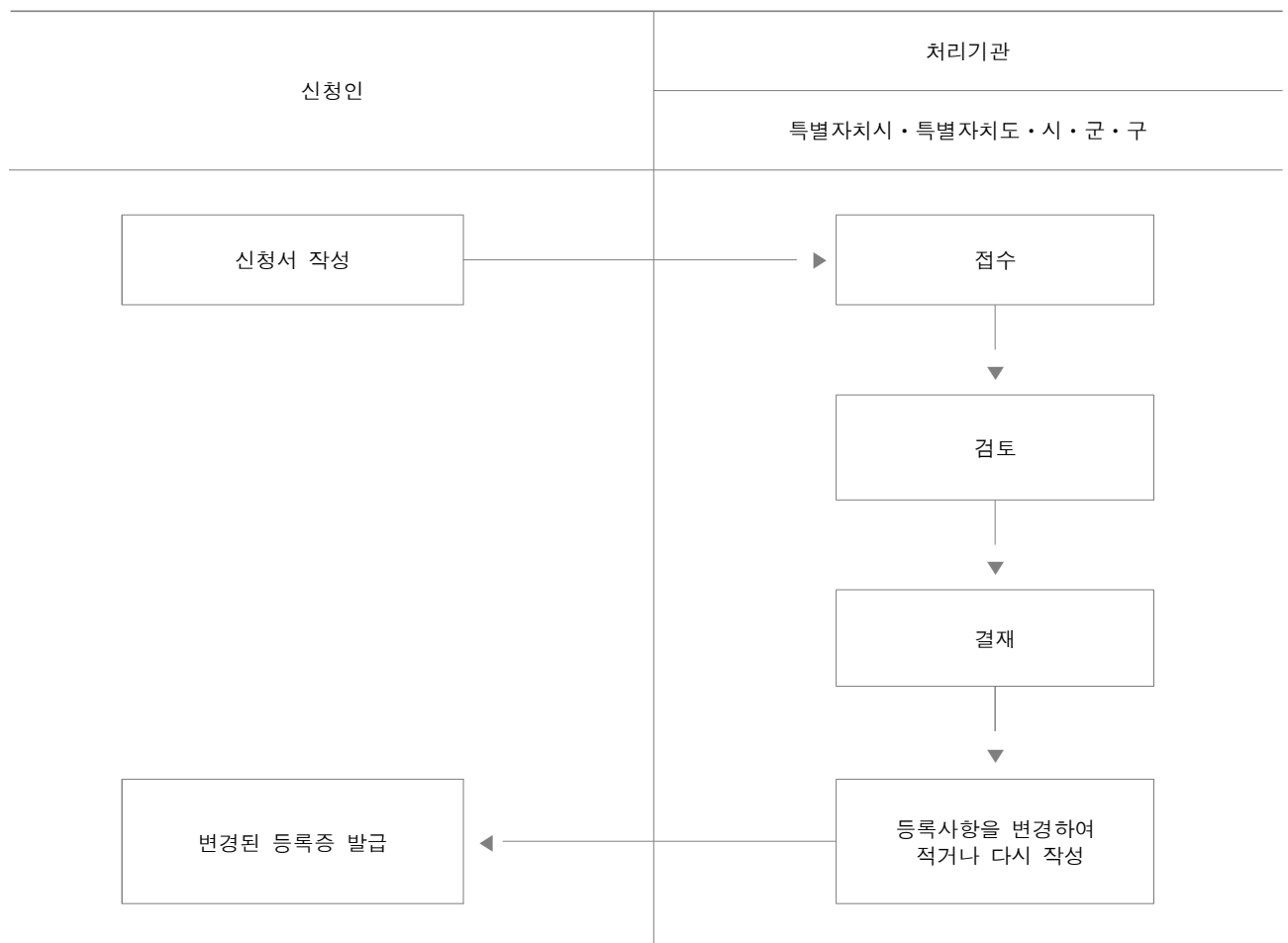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동력수상레저기구 말소등록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		
기구의 종류		기구의 명칭	
등록번호			
사유 [] 멸실·기능상실 [] 분실·도난 [] 수출 [] 용도폐지 [] 그 밖의 사유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말소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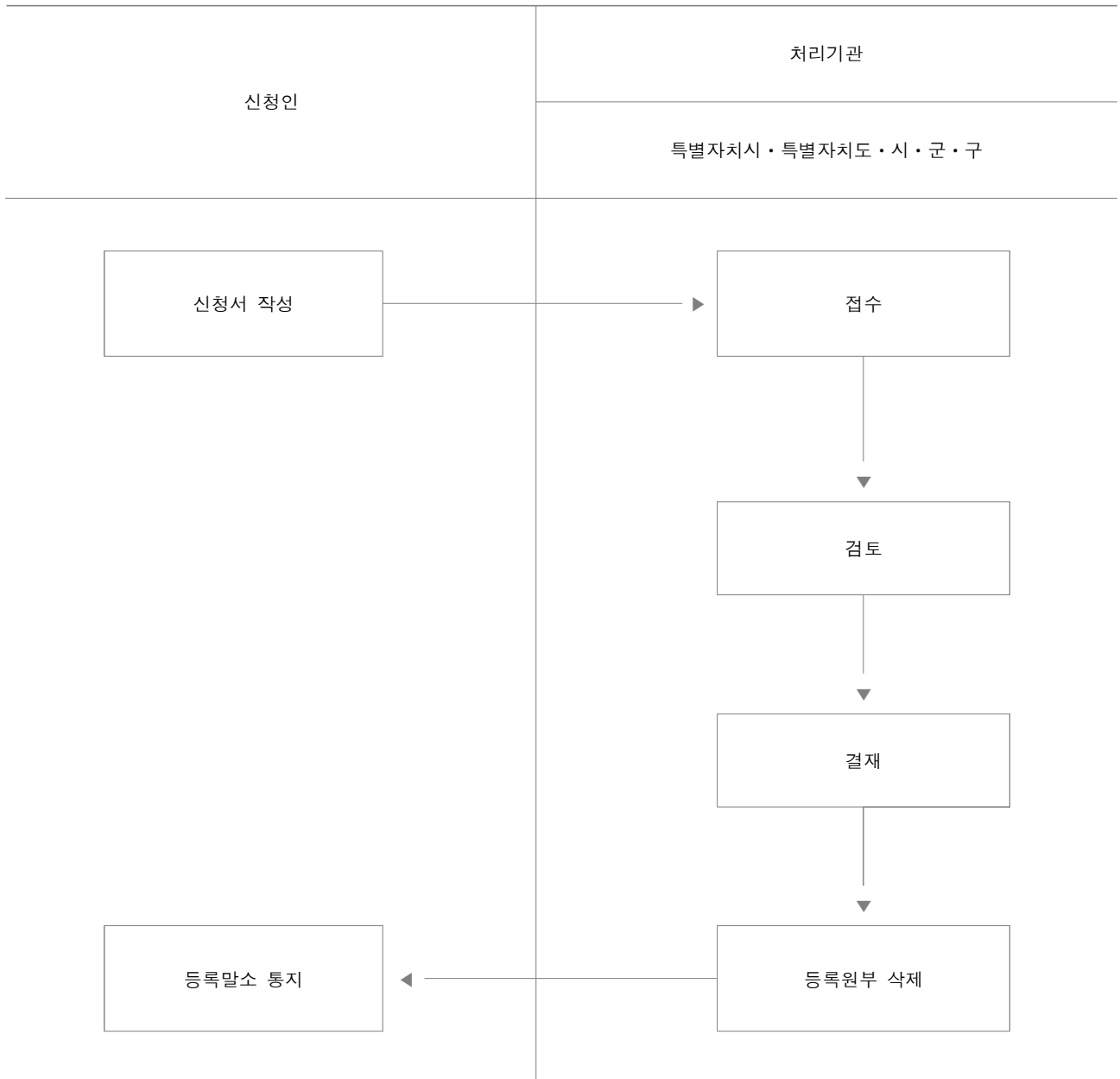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증 2. 해양경찰관서 또는 경찰관서에서 발급하는 사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멸실되거나 수상사고가 발생한 경우만 제출합니다) 3. 해양경찰관서 또는 경찰관서에서 발급하는 분실·도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분실·도난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3. 사용 폐지 또는 수상레저활동 목적 외의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분실·도난 외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4. 등록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 그 사람의 승낙서 또는 그 사람에게 대항할 수 있는 증명서 5. 구조·설비·장치 변경에 따라 등록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에서 제외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6. 수출신고필증 등 수출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수출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1,500원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의 경정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5일
------	------	------	----

신청인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기구	등록번호	종류
----	------	----

소유자	성명 또는 명칭
	주소 • 국적

경정사항구분	[] 제원 [] 등록원부(갑) 사항 [] 기타
--------	---

경정 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등록원인 및 원인행위 연월일	(년 월 일)
--------------------	--------------------------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사항의 경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

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1. 등록에 관한 착오나 빠진 부분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등록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의 승낙서 또는 그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	수수료 없음
----------------------	---	-----------

시험운항허가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시	발급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운항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사항	기구의 종류	기구의 명칭		
	시험운항의 목적			
	건조[] 개조[] 수리[]			
	출발지	시험운항구역		
	시험운항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험운항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해양경찰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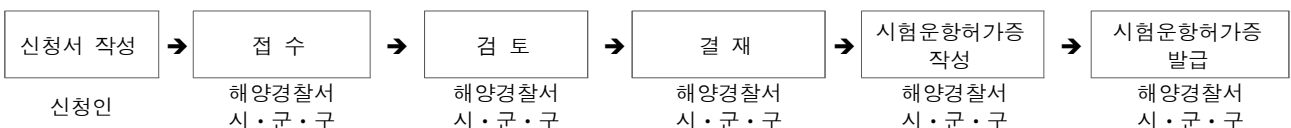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시험운항 계획서 1부 2. 시험운항 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 사진 4장 (전면 1장, 좌우측면 각 1장, 후면 1장)	수수료 없음
------	---	-----------

유의사항

-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사진의 크기나 양식은 제한되지 않지만 해당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외관이 확인될 수 있어야 합니다.
- 시험운항 출발지는 수상레저기구가 실제 출항하는 지역의 주소를 적습니다.
- 시험운항구역은 출발지로부터 직선으로 10해리 이내만 가능합니다.
- 시험운항 기간은 7일을 초과할 수 없고 운항시간은 해뜨기 전 30분부터 해진 후 30분까지 운항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시험운항 계획서

(앞쪽)

운항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시험운항 계획	1일차	출항 일시·장소	입항 일시·장소	주 운항구역	
	2일차	출항 일시·장소	입항 일시·장소	주 운항구역	
	3일차	출항 일시·장소	입항 일시·장소	주 운항구역	
	4일차	출항 일시·장소	입항 일시·장소	주 운항구역	
	5일차	출항 일시·장소	입항 일시·장소	주 운항구역	
	6일차	출항 일시·장소	입항 일시·장소	주 운항구역	
	7일차	출항 일시·장소	입항 일시·장소	주 운항구역	
	구비 장비	통신기기 [] 소화기 [] 구멍조끼 [] 그 밖의 안전장비()			
	동승자	성명		전화번호	
성명		전화번호			
성명		전화번호			
성명		전화번호			

건조·개조 ·수리 현황	시험운항의 목적			
	건조[] 개조[] 수리[]			
	건조·개조·수리 일정 년 월 일 ~ 년 월 일		건조·개조·수리 장소(조선소 등)	
건조·개조 ·수리 책임자	성명		전화번호	

(뒤쪽)

자력항해가 불가능한 경우의 대응계획	예인 계약을 체결한 경우		
	예인자	성명(상호)	전화번호
	예인 선박	선박의 종류	선박명
		선박등록번호(수상레저기구 등록번호)	
예인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대응 방안을 기재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시험운항허가증

운항자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허가번호	시험운항 허가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출발지	시험운항구역	
기구의 종류	기구의 명칭	
시험운전의 목적 건조[] 개조[] 수리[]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험운항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해양경찰서장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유의사항

1. 시험운항허가증은 허가기간 동안 소지하거나 발급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시험운항허가증은 시험운항 허가기간 만료일부터 3일 이내에 발급관청에 반납해야 합니다.
3. 시험운항허가 유효기간이 지났음에도 시험운항이 계속 필요한 때에는 시험운항허가증을 반납한 후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4. 시험운항시간은 해뜨기 전 30분부터 해진 후 30분까지 운항할 수 있습니다.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신청서

[] 신규 [] 정기 [] 임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4일
------	------	----------

소유자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

수검요청일	년	월	일
-------	---	---	---

안전검사를 받고자 하는 장소 또는 위치

수상 레저 기구 명세	등록번호(신규검사인 경우 생략)	
	기구명	용도 []개인용 []사업용
	종류 []수상오토바이 []모터보트 []고무보트 []세일링요트	재질 []강선 []목선 []FRP선 []알루미늄선 []그 밖의 재질()
	총톤수(톤)	기구의 길이(m)
	승선정원(명)	제조 연월일
	기관형식 및 모델명	최대 출력(마력)
	운항구역 []평수구역, []연해구역, []근해구역 []원양구역, []한정연해구역, []내수면	기구제작 []국내(제조자:) []수입(제조국:)

비고
[] 총톤수 측정 [] 도면 확인 [] 복원성자료 확인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신규 []정기 []임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경찰청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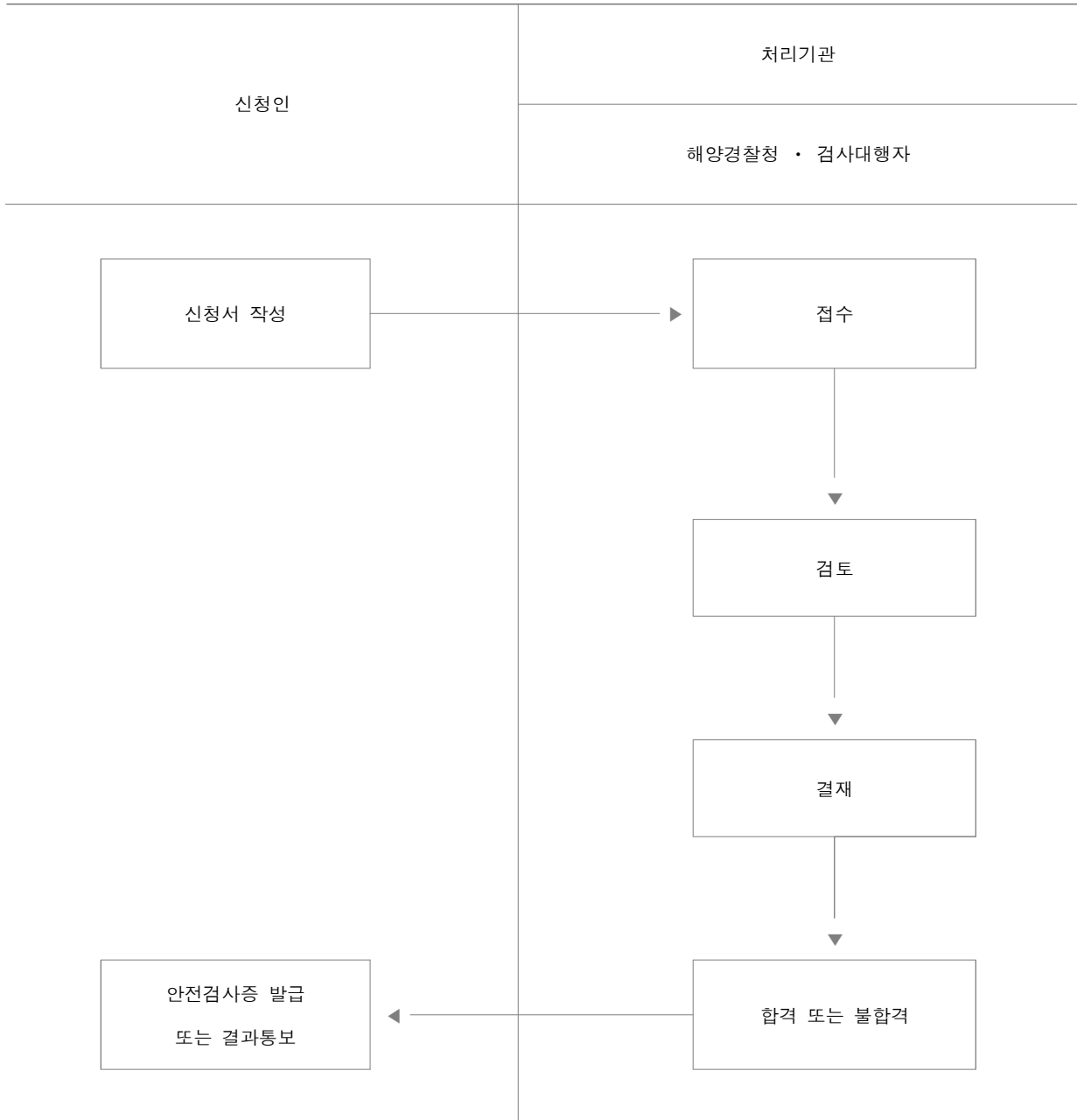
안전검사 대행기관장 귀하

첨부서류	1. 검사대상 장비 명세서 2. 별표 3의 구분에 따른 도면(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부 3. 「선박안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복원성에 관한 자료 (승선정원이 13명 이상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부 4. 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무선설비, 위치발신장치의 허가증(「전파법」 제19조에 따른 무선국 허가와 관련된 서류) 또는 검사증 등 설비의 적합성을 증명하는 서류(무선설비 또는 위치발신장치가 설치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선박용 물건의 검정을 증명하는 서류(선박용 물건임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수수료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제 호 (Certificate No:)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증

(Survey Certificate for Power-Driven Water Leisure Craft)

☐ 신규 ☐ 정기 ☐ 임시
New Renewal Temporary

제원 (Data)	종류 (Kind of Watercraft)	기구명 (Name of Watercraft)	총톤수 (Gross Tonnage)
	승선정원(Number of crew)	제조 연월일 Date of Manufacture (Y/M/D)	등록 번호 (Official Number)
	기관형식 (Cycle of Engines)	기관 번호 (Official Number of Engines)	기관의 수 (Number of engines)
	길이(Length)	너비(Width)	깊이(Depth)
	최대 출력(Maximum Power)	최대 속도(Maximum speed)	

운항구역(Navigation Area)

운항과 관련한 조건(Conditions for Navigation)

유효기간(Validity)

☐ 사업용 (For Business) 년(Y) 월(M) 일(D) ~ 년(Y) 월(M) 일(D)
☐ 개인용 (For Individual) 년(Y) 월(M) 일(D) ~ 년(Y) 월(M) 일(D)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1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안전검사에 합격하였음을 증명합니다.(This certificate is issu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16 of the Registration and Inspection of Water Leisure Craft Act and Article 16, clause 1 of the Enforcement Regulation of the same Act.)

년(Y) 월(M) 일(D)

해양경찰청장(Commissioner General of Korea Coast Guard)

안전검사 대행기관장(President of the Agency for Safety Survey)

직인

변경사항(Any Changes for watercraft)

연월일 Date(Y/M/D)	내용 (Content)	확인 (Confirmation)

비 고

[] 안전검사증
[] 안전검사필증 재발급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소유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		
신청내용	기구명	등록번호	
	기구종류	총톤수	
재발급 사유	[] 분실, 도난 등으로 없어진 경우 [] 알아보기 곤란하게 된 경우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안전검사증(안전검사필증)을 재발급 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경찰청장
안전검사 대행기관장

귀하

첨부서류	해당 안전검사증 또는 안전검사필증(없어진 경우는 제외합니다)		검사대행자가 정하는 수수료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안전검사(필)증 작성	→	안전검사(필)증 발급
신청인		검사대행자		검사대행자		검사대행자		검사대행자		검사대행자

검사대행자 지정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0일
신청자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검사대행 기구			
검사의 범위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검사대행자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경찰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검사업무 규정(기술인력 관리 및 검사 시행절차 등 검사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2. 사업계획서(조직도와 전국 단위의 검사업무 이행계획서를 포함합니다) 3.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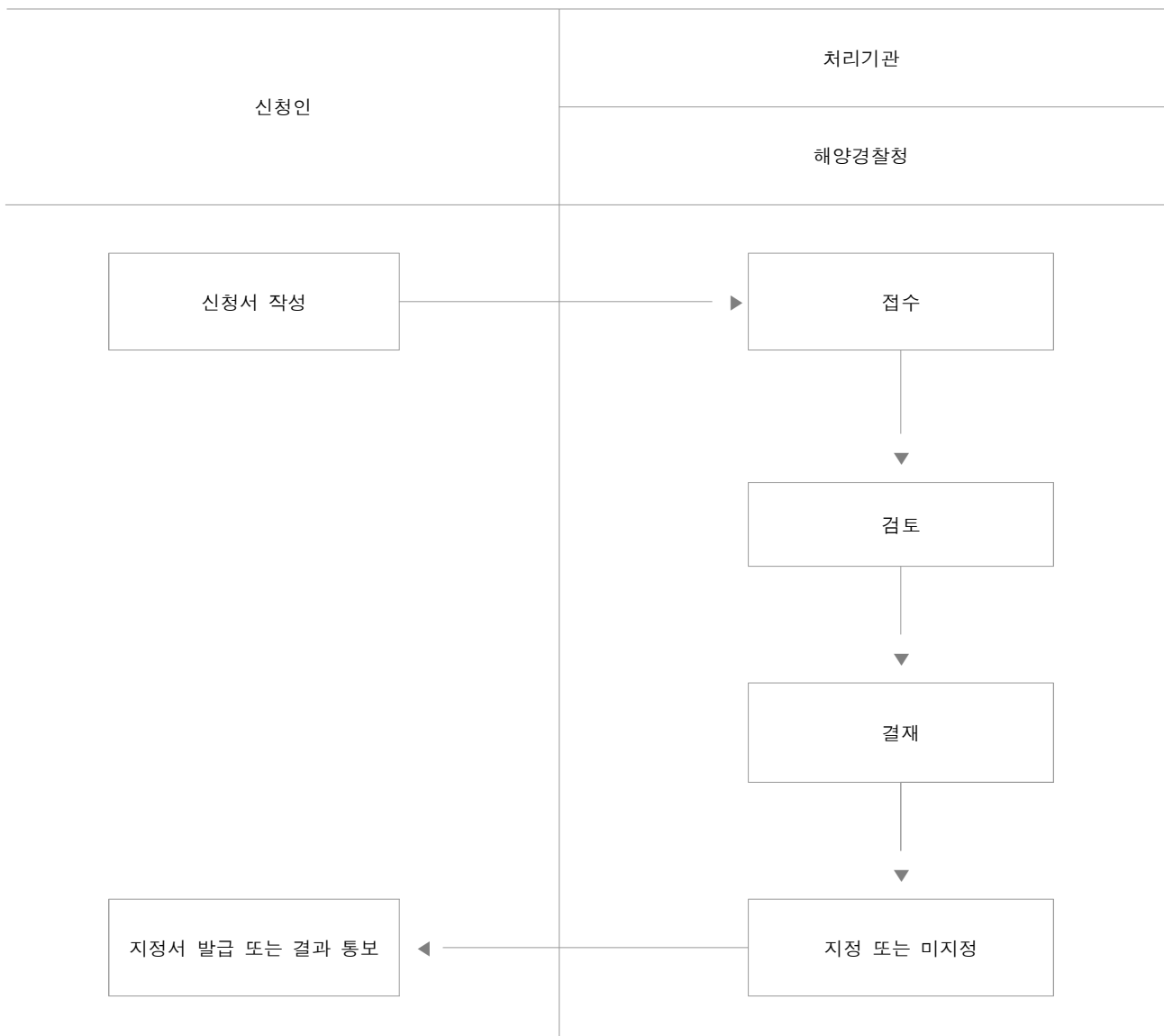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제 호

검사대행자 지정서

검사 대행자	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검사대행 기구		
검사의 범위		

위 기관을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라 검사대행자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해양경찰청장

직인

제 호

안전검사대행자 [] 지정취소
[] 업무정지 **통지서**

안전검사 대행자	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지정일		취소일
정지일		정지기간 ~
취소(정지) 사유		

1.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검사대행자 (□지정취소 □업무정지)처분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2. 안전검사대행자 지정취소 된 경우 년 월 일까지 해양경찰청에 안전검사대행자 지정서를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3. 이 통지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해 양 경 찰 청 장

직인

〈 의안 소관 부서명 〉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과	
연 락 처	(032) 835 - 2351